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 회)	

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김완섭 (환경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24.2.6)됨에 따라 법률에서 하위법령에 정하도록 한 자발적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의 세부 기준, 배출권 추가할당 및 할당취소의 세부 사유, 배출권거래중 개회사의 등록 및 등록취소, 준수사항 등에 관한 세부 기준, 온실가스 검증협회의 설립허가 절차, 과태료 부과에 관한 세부 기준 등을 규정하는 한편, 감축노력 없는 배출량 감소로 인해 기업의 형재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출권 할당의 취소 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자발적으로 배출권 할당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안 제9조제4항)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자발적으로 배출권 할당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 기준을 구체화

나. 배출권의 추가할당(안 제27조, 제28조)

쟁송의 결과에 따라 기업의 배출권 할당량을 재산정 시, 그 값이 증가하는 경우 추가할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다. 배출권의 할당취소(안 제29조제3항·4항·5항 등)

- 1) 시설의 가동중지 등으로 배출량이 감소한 경우의 할당취소 기준을 정비하여 감축노력과 상관없는 기업의 횡재이익을 최소화하는 한편, 배출량 감소 구간별로 할당 취소량을 차등화하여 규제 순응도를 제고
- 2) 쟁송의 결과에 따라 기업의 배출권 할당량을 재산정 시, 그 값이 감소하는 경우 할당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라. 배출권 시장참여자 확대(안 제31조)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집합투자업자, 은행, 보험사, 기금관리주체 등 시장참여자를 확대

마. 배출권의 중개거래(안 제31조의2)

배출권 시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특정 시장참여자는 배출권거래중개회사를 통해 배출권을 거래하도록 규정

바. 배출권 거래계정의 등록(안 제32조)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거래계정 등록을 신청할 경우 거래목적을 구분하도록 하고,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위탁자를 위해 취득한 배출권을 대신하여 배출권등록부에 등록할 경우 위탁자가 거래계정을 등록한 것으로 간주

사. 배출권 거래의 신고(안 제33조)

배출권거래소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에게 거래내역을 통보하거나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위탁자의 배출권을 거래한 내역을 거래계정에 등록한 경우 거래소에서의 거래자 또는 위탁자가 배출권거래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

아. 배출권거래소의 업무 및 감독 등(안 제34조, 제35조)

배출권거래소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사항을 추가하고, 거래소의 지정취소·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기준, 임직원 등의 업무상 비밀 누설 금지, 상근임직원의 이해상충 방지 등 준수사항을 명시

자.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등록, 등록취소 및 준수사항(안 제36조 등)

- 1)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갖춰야 하는 설비기준을 규정
- 2)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업무정지, 등록취소 등 법률에서 위임한 행정처분 세부요건과, 등록취소된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배출권 처분에 관한 절차 등 규정
- 3) 법률에서 정한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준수사항의 세부적인 기준과 규정등을 명시(신의성실의무, 이해상충 관리를 위한 내부통제기준 수립, 시장참여자 명세 통보, 불건전영업행위 및 손실보전·이익보장 금지 등)

차. 시장참여자에 대한 감독(안 제36조의13)

환경부장관이 공정하고 투명한 배출권 거래 체계 운영을 위해 금융감독원의 협조를 받아 시장참여자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

카. 배출권시장조성자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안 제37조의2)

배출권시장조성자의 지정과 지정취소에 관한 세부기준, 지정 취소된 시장조성자의 배출권 처분에 관한 절차 등 규정

타. 시장 안정화조치의 기준(안 제38조)

시장 안정화 조치를 할 수 있는 요건을 변경하여 과도한 배출권가격 하락 상황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

파. 배출권 보고, 제출, 이월, 차입, 상쇄배출권 유효기한 등 연장(안 제38조제2항, 제44조 등)

배출량 명세서 변경 시 보고기한을 30일로 연장하고, 배출권의 제출, 이월·차입 신청, 상쇄배출권의 유효기한을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8개월 이내로 연장

하. 온실가스검증협회의 설립 및 주요업무(안 제41조의2, 제41조의3)

온실가스 검증 관련 법정협회의 설립을 위해 필요한 서류요건을 규정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량 등의 검증에 관한 조사·연구·교육 등 협회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를 명시

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 및 위탁(안 제57조)

1) 시장참여자의 배출권거래계정 등록 관련 업무를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위임

2)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등록·등록취소·관리·감독에 관한 업무, 적합성평가 처리시스템, 법제35조제1항제7호의 지원활동에 관한 업무 등을 한국환경공단에 위탁

3) 검증심사원의 업무기준에서 정하는 교육 중 보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온실가스검증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너. 과태료의 부과기준(안 제58조)

법률에서 위임한 과태료의 부과 세부기준을 마련

더. 검증기관의 행정처분 기준(안 별표4)

위법사항의 경중(업무정지 명령 위반/시정명령 위반)에 따라 행정처분을 달리하도록 규정

러. 검증심사원의 행정처분 기준(안 별표7)

위법사항의 경중(업무기준 위반/자격정지 처분 위반)에 따라 행정처분을 달리하도록 규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전(前)임

3) 행정규제 : 규제영향분석서, 별첨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활동자료량을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아 보유한 업체로서 다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를 제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중전의 제1호) 중 “**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체(이하 “관리업체”라 한다)로서 같은 조 제6항**”을 “**기본법 제27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3,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₂-eq) 이상인 업체**

3. **법 제41조제3항제1호에 따른 벌금에 처한 사실이 없을 것**

제19조제1항 중 “**법 제12조제4항제1호**”를 “**법 제12조제5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조제4항제2호**”를 “**법 제12조제5항제2호**”로 한다.

제23조제1항제4호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신청에 의한 배출권의 추가 할당)”을 “(신청 등에 의한 배출권의 추가 할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제1항제4호”를 “법 제16조제1항제5호”로 한다.

②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의 결과에 따라 할당량을 재산정하면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할당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28조의 제목 “(신청에 의한 배출권의 추가 할당량 결정 등)”을 “(신청 등에 의한 배출권의 추가 할당량 결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1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법 제16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을 “환경부장관은 제1항”으로, “받은 환경부장관은”을 “받거나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의 결과 관련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할당량을 다시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말한다)”를 “말한다. 법 제16조제1항제2호부터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기존 할당량과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의 결과를 반영하여 산정되는 할당량의 차이(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28조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7조제2항에 따라 추가 할당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심판, 행정

소송 및 그 밖의 쟁송의 결과가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

제29조제3항 중 “**할당량의 100분의 50**”을 “**할당량 대비 100분의 15이상 감소한 수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할당 대상업체의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중 그 사업장 단위로 할당된 배출권에서 그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외한 수량의**”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량에서 제17조에 따른 배출권 할당의 기준을 고려하여 산정한**”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부터 제13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4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항(중전의 제8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중전의 제9항) 중 “**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중전의 제10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중전의 제11항) 중 “**제10항**”을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4항(중전의 제13항) 중 “**제12항**”을 “**제13항**”으로 한다.

1. 해당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배출효율기준방식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활동자료량을 기준으로 산정한 배출량을 말한다)이 해당 사업장에 할당된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할당량 대비 100분의 15이상 100분의 25미만 감소한 수준인 경우 :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중 그 사업장 단위로 할당된 배출권에서 그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외한 수량의 100분의 50에 해

당하는 수량

2. 해당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배출효율기준방식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활동자료량을 기준으로 산정한 배출량을 말한다)이 해당 사업장에 할당된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할당량 대비 100분의 25 이상 100분의 50미만 감소한 수준인 경우 :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중 그 사업장 단위로 할당된 배출권에서 그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외한 수량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수량

3. 해당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배출효율기준방식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활동자료량을 기준으로 산정한 배출량을 말한다)이 해당 사업장에 할당된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할당량 대비 100분의 50이상 감소한 수준인 경우 :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중 그 사업장 단위로 할당된 배출권에서 그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외한 수량

⑦ 법 제17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의 결과에 따라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할당량을 재산정하면 할당량이 감소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기존 할당량과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의 결과를 반영할 때 산정되는 할당량의 차이에 해당하는 수량의 배출권을 취소한다.

제3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③ 배출권은 법 제22조에 따른 배출권 거래소가 개설한 배출권 거래시장(이하 “배출권 거래소시장”)에서 거래(이하 “장내거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배출권 거래소시장 외의 장소에서 거래할 수 있다.

④ 법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배출권시장 조성자 또는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제외한다)
4. 국가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기금관리주체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9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은행 및 보험회사
6.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배출권의 중개거래) ① 제31조제4항에 따른 시장 참여자의 배출권 거래는 배출권거래중개회사를 통하여 한다.

②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배출권 거래를 위탁한 시장 참여자(이하

“위탁자”라고 한다)의 중개거래로 취득한 배출권은 위탁자의 소유로 본다.

③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배출권의 최대 수량 내에서 위탁자의 배출권 최대 보유한도를 관리해야한다.

제32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2조제4항 중 “**법 제20조제2항**”을 “**법 제20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배출권 거래계정 등록신청서에 법 제22조의 3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배출권 거래목적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⑦ 법 제20조제1항 및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1조제4항에 해당하는 자는 배출권 거래계정 등록신청서의 제출을 배출권거래중개회사와 체결한 위탁계약서로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위탁자를 위하여 취득한 배출권을 배출권등록부에 최초로 등록하는 경우 배출권 거래계정의 명의와 관계없이 위탁자가 배출권등록부에 배출권 거래계정을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⑧ 배출권 거래계정의 등록 절차, 서식, 등록신청서의 적절성 검토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3조제2항에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3항) 중 “제1항·제2항”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1의2. 법 제22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배출권 또는 배출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의 운용을 위한 배출권의 매매거래 여부

1의3. 법 제2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배출권 또는 배출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의 운용을 위한 배출권의 중개거래 여부

1의4.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할당대상업체의 거래 여부

③ 배출권거래소가 기본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장에게 배출권 거래 내역을 통보하는 경우 법 제21조에 따라 배출권 거래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④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위탁자를 위하여 배출권 거래를 하고 해당 거래 내용을 배출권 거래계정에 등록한 경우, 법 제21조에 따라 위탁자가 배출권 거래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34조제4항제2호 중 “거래시장”을 “거래소시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배출권 거래를 중개하는 회사”를 “배출권거래중개회사”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중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7항”으로 한다.

⑤ 법 제22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배출권 거래소의 지정요건을 위반한 경우

2. 배출권 거래소로 지정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요건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⑥ 법 제22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2조제5항의 업무정지 조치를 위반하여, 업무의 정지가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2. 그 밖에 배출권 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1조제1항에 따라 거래소 허가의 취소 조치를 받은 경우

⑦ 법 제22조제5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1조제2항에 따라 거래소 업무 정지 조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제35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파생상품의**”를 “**금융투자상품의**”로, “**파생상품에**”를 “**금융투자상품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3항) 중 “**한다**”를 “**하며, 배출권 거래소에 관한 감독 및 검사는 법 제22조의4를 준용한다**”로 한다.

5.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운영규정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권 상품의 일간 매매거래량 및 그 성립가격과 최고·최저 및 최종가격 등 시세의 공표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배출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의

발행·운용의 범위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배출권 거래소의 임직원 및 임직원이었던 자는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배출권 거래소의 상근 임직원은 배출권 거래소의 회원과 다음 각 호의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져서는 아니 된다.

1. 자금의 공여

2. 손익의 분배

3. 채무보증

4. 담보제공

5. 정상적인 거래활동(거래 상대방의 사업 내용과 관련되거나 사업목적 달성에 수반되는 행위로서 거래조건 등에 비추어 사회 통념상 일반적인 거래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이해관계

⑤ 배출권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 간에 해당 정보의 교류를 차단하여야 한다.

1.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업무, 배출권 거래소시장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시장 사이의 연계감시, 관련 징계 업무(이하 이 항에서 “시장감시 업무 등”이라 한다)와 배출권 거래소시장의 매매체결 관련 업무간의 경우 : 시장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회원에 대한 감리 및 배출권 거래

소시장과 금융투자상품시장 사이의 연계감시에 관한 정보. 다만, 배출권 거래소시장의 매매체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시장감시업무 등을 담당하는 부서로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시장감시업무 등과 청산업무 간의 경우 : 시장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회원에 대한 감리 및 배출권 거래소시장과 금융투자상품시장 사이의 연계감시에 관한 정보. 다만, 청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시장감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시장감시업무를 위하여 매매확인, 채무인수, 차감 및 결제내역 확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⑥ 제5항 각 호의 업무 간에 정보의 교류 차단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정보(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를 제공하지 아니할 것
2. 임원(대표이사, 감사 및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제외한다) 및 직원이 제5항 각 호의 업무를 겸직하지 아니할 것
3. 사무공간을 분리하고 제5항 각 호의 정보에 관한 전산자료가 독립적으로 저장되어 관리·감독·열람될 수 있도록 할 것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방법

제36조의 제목 “(배출권 거래를 중개하는 회사)”를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등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

항 중 “제1항에 따른 배출권거래증개회사가 갖추어야 하는 정보통신망이나 정보처리시스템”을 “배출권거래증개회사의 등록 및 절차, 서식 등”으로 한다.

① 법 제22조의3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8의 설비기준을 말한다.

제36조의2부터 제36조의1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배출권거래증개회사에 대한 조치) ① 법 제22조의3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배출권거래증개회사로 등록을 한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을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업무를 12개월 이상 계속해서 하지 아니한 경우
2. 배출권거래증개회사의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부터 금전 등을 받거나 타인에게 줄 금전 등을 취득한 경우

② 법 제22조의3제3항에 따른 배출권거래증개회사의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9과 같다.

③ 환경부장관은 배출권거래증개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배출권거래증개회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중지명령
2. 배출권거래증개회사가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3. 기관경고 또는 기관주의

제36조의3(등록취소된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배출권 처분) ① 법 제22조의3제4항에 따라, 등록취소된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환경부장관의 배출권 처분 명령에 근거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분해야 한다.

1. 법 제22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배출권 : 다른 배출권거래중개회사를 통해 매도
2. 법 제2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타인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배출권 : 위탁자에게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등록 취소사실과 배출권의 처분 의무, 처분 기간과 처분 방법 및 처분에 관한 의사결정 절차에 대하여 통지하고, 위탁자의 결정에 따라 다른 배출권거래중개회사를 통해 매도하거나 다른 배출권거래중개회사로 이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등록취소된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법 제22조의3제4항에 따라 배출권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 법 제22조의3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1개월의 기한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배출권을 처분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배출권의 취소
2. 제1항제2호에 따라 보유한 배출권은 환경부장관이 위탁자에게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등록취소 사실과 배출권의 처분 의무, 처분 기간과 처분 방법 및 처분에 관한 의사결정 절차에 대하여 통지하고, 직권으로 배출권을 이전받을 배출권거래중개회사를 지정하고 배출권 이전을 명령

③ 등록취소된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배출권의 처분에 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6조의4(신의성실의무와 이해상충의 관리를 위한 내부통제기준의 구축) ①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배출권거래중개업을 영위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이 구축되어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낮출 경우에 한하여 법제22조의2에 따른 배출권시장 조성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배출권거래중개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배출권거래중개회사와 시장 참여자간, 시장 참여자들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하여 내부통제기준을 수립하고, 수립한 내부통제기준의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를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이 때 내부통제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22조의3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업무의 분장과 조직 분리, 정보교류 차단에 관한 사항
2. 제2항에 따라 배출권거래중개회사와 배출권시장 조성자 업무의 분장과 조직 분리, 정보교류 차단에 관한 사항
3. 임직원이 업무를 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
4. 임직원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의

계열회사(위탁자가 계열회사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방법과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 및 위탁자의 배출권 중개거래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의 배출권 또는 배출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 매매에 관련한 보고 등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6. 이해상충의 파악과 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내부통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36조의5(미공개중요정보) 법 제22조의3제6항에서 “미공개 주요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한다.

1. 배출권 거래 목적에 따른 보유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2. 배출권 거래 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3. 제1호 및 제2호의 정보에 준하는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제36조의6(자료의 기록·유지)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법 제22조의3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다음 각 호의 기간동안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과 시장 참여자 보호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그 기간을 단축하여 고시할 수 있

다.

1. 영업에 관한 자료

가. 주문기록, 매매명세 등 시장 참여자의 배출권 및 배출권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의 운용을 위한 배출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 관련 자료 : 10년

나. 위탁자와 체결한 계약 관련 자료: 10년

다. 그 밖의 영업 관련 자료: 5년

2. 고유재산 및 위탁재산 운용 관련 자료: 3년

3. 내부통제에 관한 자료

가. 내부통제기준, 위험관리 등 준법 감시 관련 자료: 5년

나. 임원·전문인력의 자격, 이해관계자 등과의 거래내역 관련 자료:
5년

다. 그 밖의 내부통제 관련 자료: 3년

제36조의7(매매명세의 통지)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법 제22조의3제6항
제5호에 따라 매매명세를 통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따라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따른 기한 내에 통지할 것

가. 배출권 거래의 체결, 종목, 수량, 가격, 수수료 등 모든 비용 : 매
매가 체결된 후 지체 없이

나. 배출권 매매가 체결된 경우, 월간 매매내역, 손익내역, 월말 현재
예탁금 잔액 현황, 배출권 거래계정 등록 등의 내용 : 매매가 체

결된 날의 다음 달 20일까지

2. 다음 각 목의 방법 중 배출권거래중개회사와 시장 참여자간 미리 합의된 방법으로 통지할 것. 다만, 거래상대방이 통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조회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가. 서면 교부

나. 전화, 전신 또는 팩스

다. 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제36조의8(시장참여자 예탁금의 별도 예치) ①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시장 참여자로부터 받은 예탁금(배출권 거래시장에 참여하는 위탁자로부터 배출권 거래와 관련하여 예탁받은 일체의 금전을 말한다)은 고유 재산과 구분하여 지체없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7항제3호에 따른 증권금융회사에 예치해야 한다.

② 배출권거래중개회사 제1항에 따라 증권금융회사에 예탁금을 예치할 경우 그 예탁금이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거래를 위임한 시장 참여자의 재산이라는 뜻을 밝혀야 한다.

③ 누구든지 증권금융회사에 예치한 시장 참여자의 예탁금을 상계(相計)·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하지 못하며, 해당 예탁금을 예치한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별도로 고시한 경우 외에는, 증권금융회사에 예치한 시장 참여자의 예탁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증권금융회사는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위탁자의 청구에 따라 예치된 예탁금을 그 위탁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 배출권거래중개회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해산 결의를 한 경우
3.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의 투자중개업의 전부 양도 또는 전부 폐지의 승인 또는 전부 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⑤ 그 밖에 예탁금의 산정, 예치기한, 예탁금의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고시로 정한다.

제36조의9(손실보전 등의 금지)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배출권 거래와 관련하여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배출권 거래시장에 참여하는 시장 참여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2. 배출권 거래시장에 참여하는 시장 참여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3. 배출권 거래시장에 참여하는 시장 참여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4. 배출권 거래시장에 참여하는 시장참여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

제36조의10(불건전영업행위의 금지) 법 제22조의3제6항제7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금지하는 행위“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호, 제2호, 제5호, 제6호, 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6조의11(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설명의무) 법 제22조의3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배출권 거래의 내용과 특성
2. 배출권 거래의 위험 정도와 그 내용
3. 배출권거래중개계약의 해지와 해제
4. 배출권거래중개회사를 통한 배출권 거래계정의 관리
5. 수수료 비율 및 금액에 관한 사항

제36조의12(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업무보고서 제출) 법 제22조의3제8항 제3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개요 및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경영하고 있는 업무의 내용
2. 위탁자 재산 현황과 그 보호에 관한 사항
3. 배출권 매매 및 배출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의 발행
· 운용, 그 밖의 거래 관련 업무내용, 거래현황과 평가손익현황(위험 회피를 위한 매매거래의 평가손익을 포함한다) 등에 관한 사항

4. 배출권거래중개회사나 그 임직원이 최근 환경부장관, 금융위원회
원장 및 금융감독원장 등으로부터 조치를 받은 경우 그 내용

5. 그 밖에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영업이나 경영에 관련된 사항

제36조의13(시장 참여자에 대한 감독 등) ① 환경부장관은 「금융위원
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
독원”이라 한다)의 협조를 받아, 시장조성자, 배출권거래중개회사, 그
리고 제31조 제4항의 시장 참여자의 배출권 거래시장 관련 업무와 재
산 상황에 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배출권 매매거래와 배출권 중개거래의 공정한 수행
과 배출권등록부의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에게 제1항의 시장 참여자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9조에 따른 검사를 요구하거나, 환경부와
의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배출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배출권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7조의 제목 “(배출권시장 조성자)”를 “(배출권시장 조성자의 지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8항을 제1
0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
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중
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중전의 제7

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9항”으로 한다.

③ 법 제22조의2에서 정하는 자 중에서 시장조성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는 별표 10에서 정한 시장조성자 지정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성과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시장조성자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시장조성자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시장조성자로 지정할 수 없다.

⑤ 환경부장관은 시장조성자에게 시장조성에 필요한 배출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장조성 예비분에서 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항의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각 시장조성자에게 물량을 달리하여 대여할 수 있다.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배출권시장 조성자의 지정취소 등) ①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조성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합병·파산·폐업 등의 사유로 사실상 영업을 종료한 경우
2.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는 경우 등 배출권 거래시장의 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른 활동 실적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거나 그 기한 내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4. 법 제22조의2제4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활동 실적을 평가하여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하지 않은 경우
5. 시장조성자의 의무이행 실적이 현저히 미흡한 것으로 평가될 경우
6. 제37조제3항에 따른 시장조성자 지정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7. 그 밖에 시장조성 행위를 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시장조성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환경부 장관은 6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이 취소된 시장조성자가 다음 각 호에 따라 보유한 배출권을 처분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1. 예비분에서 대여받은 배출권 : 배출권으로 상환
2. 지정취소된 시장조성자가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는 배출권 : 배출권거래중개회사를 통하여 매도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정이 취소된 시장조성자가 보유한 배출권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환경부장관은 직권으로 해당 시장조성자가 보유한 배출권을 법 제18조에 따른 예비분 관리를 위한 계정으로 배출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시장조성자가 보유한 배출권을 처분한다.

제38조제3항제1호 중 “**직전 2개 연도**”를 “**최근 2년간**”으로, “**60**”을 “**70**”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조치의 시행 방법**”을 “**조치의 시행 방법,**

산정 방식”으로 한다.

제39조제2항 중 “15일”을 “30일”로 한다.

제40조제2항 중 “있다”를 “있고, 검증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은 지정일로 부터 3년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미 지정된 것으로 보는”을 “지정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 중 “법 제24조의2제4항”을 각각 “법 제24조의2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제7항”을 “제2항 후단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법 제24조의2제5항”을 “법 제24조의2제7항”으로 한다.

제41조제4항 및 제5항 중 “법 제24조의3제3항”을 각각 “법 제24조의3제4항”으로 한다.

제41조의2 및 제4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온실가스검증협회의 설립허가) ① 법 제24조의4제1항에 따라 온실가스검증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 설립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1. 설립취지서
2. 창립총회 회의록
3.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정관
 - 가. 명칭
 - 나. 목적
 - 다. 사무소의 소재지

라. 협회의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마.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바. 임원 및 직원, 기구 및 조직 등에 관한 사항

사. 회원의 자격, 가입·탈퇴, 권리·의무, 직무상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

아. 회의에 관한 사항

자. 회비에 관한 사항

차.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

카.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임원 취임 예정자의 취임승낙서

5. 재산에 관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6. 제41조의3 각 호에 따른 업무를 포함한 협회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업무의 수행계획서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의4제3항에 따른 협회의 설립허가를 할 때
에 제1항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이 법령과 법 제24조의4제1항에 따른 협
회 설립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확인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설립 허가를 받은 협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협회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회에 자
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⑤ 협회의 사업에 드는 경비는 회원이 내는 회비와 사업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41조의3(온실가스검증협회의 업무 등) 법 제24조의4제5항에 따라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량 등의 검증에 관한 조사·연구·교육·홍보
2. 온실가스 검증의 공정성·전문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사업
3. 온실가스 검증 관련 국제교류 및 협력
4. 온실가스 검증과 관련된 업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 받은 업무
5. 그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업무

제42조제4항 중 “법 제25조제3항”을 “법 제25조제4항”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6개월 이내(법 제38조제1항제3호·제4호·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를 말한다)”를 “8개월 이내”로 한다.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할당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중 늦은 날부터 10일”을 “자는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8개월”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3항) 중 “제출기한 10일 전”을 “제출기한”으로 한다.

제47조제4항 중 “6개월(법 제38조제1항제3호·제4호·제8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을 “8개월”로 한다.

제57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시장 참여자의 배출권 거래제정의
등록 및 관리·운영

제57조제3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법
제25조제1항”을 “법 제13조제2항, 제24조 및 제25조제1항”으로, “인증”
을 “인증 등”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의2부터 제5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법 제22조의3에 따른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등록·등록 취소 및
관리·감독

5의2.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적합성 평가를 위한 처리 시스템의 구축
· 운영

5의3.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인증결과의 할당대상업
체 통지 및 배출권등록부 등록

5의4.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원활동 중 제53조제1항제7호의 온실가
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 절약, 효율 향상 등의 촉진 및 설비 투자사업
에 대한 지원활동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제41조제3항에 따른 검증심
사원 업무기준에서 정하는 교육 중 검증심사원이 등록일로부터 매 2

년마다 받아야하는 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5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별표 3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제11호 및 제10호로 하고, 같은 표 제11호(중전의 제10호) 중 “법 제24조의2제4항”을 “법 제24조의2제5항”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라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후단 중 “법 제24조의2제4항 제1호”를 “법 제24조의2제5항제1호”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의 근거법조문란 중 “제4항제1호”를 “제5항제1호”로 하며, 같은 호 나목의 근거법조문란 중 “제4항제2호”를 “제5항제2호”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의 근거법조문란 중 “제4항제3호”를 “제5항제3호”로 하며, 같은 호 라목의 근거법조문란 중 “제4항제4호”를 “제5항제4호”로 하고, 같은 호 라목2) 위반행위란 2) 중 “제11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호 3)을 4)로 하고, 같은 호에 3), 가) 및 나)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별표 3 제11호에 따른 업무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가)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지정취소				

<u>나)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u>	<u>업무정지</u> <u>1개월</u>	<u>업무정지</u> <u>3개월</u>	<u>지정취소</u>
----------------------------	---------------------------	---------------------------	-------------

별표 4 제2호바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제4항제4호”를 “제5항제4호”로 하고, 같은 호 바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제4항제5호”를 “제5항제5호”로 한다.

별표 5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비고 제2호 중 “제1호자목에 따른 외부사업”을 “제1호나목”으로 한다.

1. 전문분야

검증심사원이 검증할 수 있는 전문분야의 구분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검증심사원의 전문성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전문분야를 세분화할 수 있다.

가, 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사항과 관련한 다음의 분야

- 1). 광물 분야
- 2). 화학 분야
- 3). 철강·금속 분야
- 4). 전기·전자 분야
- 5). 폐기물 분야
- 6). 농축산 및 임업 분야
- 7). 항공 분야
- 8). 공통 분야

나. 법 제24조의2제1항제3호의 사항과 관련한 다음의 분야

- 1) 에너지산업 분야
- 2) 에너지 공급 분야
- 3) 에너지 수요 분야
- 4) 제조업 분야
- 5) 화학산업 분야
- 6) 건설 분야
- 7) 수송 분야
- 8) 광업·광물 분야
- 9) 금속산업 분야
- 10) 연료로부터의 탈루배출 분야
- 11) 할로젠화탄소, 육불화황 생산 및 소비로부터의 탈루배출 분야
- 12) 용제사용 분야
- 13) 폐기물 취급 및 처리 분야
- 14) 탄소흡수원 분야
- 15) 농업 분야
- 16)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또는 재이용 분야

별표 6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표 제5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호(종전의 제5호) 중 “법 제24조의3제3항”을 “법 제24조의3제4항”으로 한다.

별표 7 제1호라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후단 중 “법 제24조의3제3항

제1호”를 “법 제24조의3제4항제1호”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제3항제1호”를 “제4항제1호”로 하며, 같은 호 나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제3항제2호”를 “제4항제2호”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제3항제3호”를 “제4항제3호”로 하며, 같은 호 다목3) 위반
 행위란 3) 중 “제8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호에 4)를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4) 별표 6 제8호에 따른 업무		자격취소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 우					

별표 7 제2호라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제3항제3호”를 “제4항제3호”로
 하고, 같은 호 마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제3항제4호”를 “제4항제4호”로
 하며, 같은 호 바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제3항제4호”를 “제4항제4호”로
 하고, 같은 호 사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제3항제4호”를 “제4항제4호”로
 한다.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9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0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설비기준 (제36조제1항 관련)

1. 다음의 설비

가. 전산설비 및 통신수단

- (1) 할당대상업체를 비롯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전자적인 방법으로 배출권의 거래 주문을 직접 입력하여 제출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 및 해당 주문을 중개할 수 있는 전산 설비 등 배출권 중개거래 물적 설비가 구축되어 있을 것
- (2) 배출권 거래소와의 시스템 연결 등을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의 증권시장에 배정된 통신회선 및 세션이 구축되어 있을 것
- (3) 주전산기, DB서버, 저장장치 등 업무 관련 전산설비의 안정성 및 성능이 충분히 검증되어있으며, 향후 영업의 급속한 확대에도 업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로 구축되어 있을 것
- (4) 방화벽 등 보안체계가 구축되어 있을 것
- (5) 모든 데이터에 대한 백업장치가 구축되어 있고, 백업자료가 별도 장소에 보관·관리되고 있을 것

나. 업무공간과 사무장비

- (1) 이해상충부서 간 별도 업무공간을 갖추는 등 정보차단벽(Chinese Wall)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할 것
- (2) 부서인원 대비 충분한 업무공간 및 사무장비를 갖추 것
- (3) 내부기관 및 감독기관 등이 감독·검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적 장애가 없을 것

다. 보안설비

- (1) 전산설비, 통신수단, 그 밖의 물적 설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검증된 보안설비(통신회선 이중화, CCTV 등)를 갖추 것
- (2) 파업 등 불시사태에 대비한 비상계획이 마련되어 있을 것
- (3) 외부에서 정보처리시스템 접속 시 안전한 접속이 가능하고 인증수단(VPN 등)을 적용할 것
- (4) 서버 및 단말 등에 대한 접근 통제 방안을 마련할 것
- (5) 직무 분리 기준을 수립할 것
- (6) 주요 데이터에 대한 접속 기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할 것

- (7) 안전한 데이터 암호화 처리방침 및 암호처리 시스템을 구축 할 것
- (8)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 중요 정보처리시스템 및 해당 시스템에 접속가능한 단말기에 대해서는 인터넷(무선통신망 포함) 등 외부 통신망과 분리·차단 및 접속을 금지할 것

라.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보완설비

- (1) 정전·화재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설비가 확보되어 있을 것
 - (2) 비상사태 발생 시 즉시 구현이 가능한 비상계획이 마련되어 있을 것
2. 그 밖의 배출권 거래 관련 업무를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물적·인적 설비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제36조의2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따른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 정도 등 다음의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의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등록취소(법 제22조의3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등록취소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법 제22조의3 제3항제1호	등록취소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투자중개업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	법 제22조의3 제3항제2호	등록취소		
다. 배출권거래중개업을 영위하면서 법 제22조의3제2항의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2조의3 제3항제3호	등록취소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법 제22조의3 제3항제4호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등록취소
마. 법 제22조의3제6항부터 제8항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2조의3 제3항제5호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등록취소
바.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2조의3 제3항제6호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등록취소
사. 배출권거래증개회사 등록을 한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을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업무를 12개월 이상 계속해서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2조의3 제3항제7호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등록취소
아.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부터 금전 등을 받거나 타인에게 줄 금전 등을 취득한 경우	법 제22조의3 제3항제7호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등록취소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배출권시장 조성자의 지정기준(제37조제3항 관련)

평가항목	평가내용	지정기준	제출서류 등
수행인력	- 시장조성 업무 담당자 지정 여부	2인 이상	- 해당 인력 이력서 등 평가항목 입증 자료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1]

과태료 부과기준(제5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 조문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상
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경우 1) 기한 내에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경우	법 제43조 제1항 제1호	100 1000	200	300
나.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43조 제1항 제2호	1,000		
다.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43조 제1항 제3호			

1)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2)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700 1,000		
라. 할당대상업체가 법 제24조제2항 에서 준용하는 기본법 제27조제3 항에 따른 시정이나 보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3조 제1항 제4호	100	300	600
마. 법 제24조의2제7항에 따른 검증업 무 수행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3조 제1항 제5호	300	600	1,000
바. 제27조에 따른 배출권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3조 제1항 제6호	1,000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등) ① ~ ③ (생략) ④ 법 제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업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를 말한다. <u><신 설></u> 1. <u>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체(이하 “관리업체”라 한다)로서 같은 조 제6항 전단에 따른 개선명령이나 같은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이 없을 것</u> 2. <u>기본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명세서의 제출을 1회 이상 했을 것</u> 3. <u>이전 계획기간에 할당대상업체로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u>	제9조(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u>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활동자료량을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아 보유한 업체로서 다음 ---.</u> 1. <u>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3,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₂-eq) 이상인 업체</u> 2. <u>기본법 제27조제6항 -----</u> -- <u><삭 제></u> 3. <u>법 제41조제3항제1호에 따른 벌금에 처한 사실이 없을 것</u>

배출권의 할당 또는 추가 할당을 신청하여 배출권을 할당 받은 사실이 없을 것(해당 업체가 이전 계획기간에 할당대상업체였다가 관리업체가 된 경우만 해당한다)

⑤ ~ ⑨ (생략)

제19조(무상할당 대상 업종 및 업체의 기준) ① 법 제12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업종”이란 별표 1에 따른 비용발생도와 무역집약도를 곱한 값이 1천분의 2 이상인 업종으로서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업종을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할당대상업체를 말한다.

1. ~ 5. (생략)

제23조(할당결정심의위원회) ① 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의 할당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이하 “할당결정심의위원회”라 한다)

⑤ ~ ⑨ (현행과 같음)

제19조(무상할당 대상 업종 및 업체의 기준) ① 법 제12조제5항제1호-----

-----.

② 법 제12조제5항제2호-----

-----.

1. ~ 5. (현행과 같음)

제23조(할당결정심의위원회) ① -

를 둔다.

1. ~ 3. (생 략)

4. 제29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의 규정에 따른 배출권 할당
의 취소

② ~ ⑦ (생 략)

제27조(신청에 의한 배출권의 추
가 할당) ① (생 략)

<신 설>

②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6. (생 략)

제28조(신청에 의한 배출권의 추
가 할당량 결정 등) ① 법 제16
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로 할당대상업
체별로 할당된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

1. ~ 3. (현행과 같음)

4. ----- 제7항-----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27조(신청 등에 의한 배출권의
추가 할당)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밖의
쟁송의 결과에 따라 할당량을
재산정하면 해당 할당대상업체
의 할당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
우를 말한다.

③ 법 제16조제1항제5호-----

-----.

1. ~ 6. (현행과 같음)

제28조(신청 등에 의한 배출권의
추가 할당량 결정 등) ① 법 제1
6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

증가한 할당대상업체는 매 이행
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자적 방식으로 환경부장관에
게 배출권의 추가 할당을 신청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고려하여 해당 할당대상업
체에 추가 할당량을 산정한다.

1. 증가된 온실가스 배출량(배
출효율기준방식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활동자료량을 말한
다)

<신 설>

2. 3. (생 략)

③ (생 략)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추가 할당량을 해당 이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받거
나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
의 쟁송의 결과 관련 할당대상
업체의 배출권 할당량을 다시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

1. -----

----- 말한
다. 법 제16조제1항제2호부터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의2. 기존 할당량과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의
결과를 반영하여 산정되는 할
당량의 차이(법 제16조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
한다)

2.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

행연도 종료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해당 할당대상업체에 통보해야 한다. <후단 신설>

⑤ ~ ⑦ (생략)

제29조(배출권 할당의 취소) ① .

② (생략)

③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할당량 중에서 그 사업장 단위로 할당된 배출권 할당량의 100분의 50을 말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할당대상업체가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시설의 폐쇄는 시설을 분할·양도·임대했으나 법 제8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그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중 그 사업

-----. 다만 제27조제2항에 따
라 추가 할당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의 결과가 확정된 날부터 3
개월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29조(배출권 할당의 취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할당량 대비 1
00분의 15이상 감소한 수준-----

④ -----

-----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량에서 제17조에

따른 배출권 할당의 기준을 고

장 단위로 할당된 배출권에서
그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외한 수량
의 배출권을 취소한다.

<신 설>

<신 설>

려하여 산정한 -----

-----.

1. 해당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
출량(배출효율기준방식을 적
용받는 경우에는 활동자료량
을 기준으로 산정한 배출량을
말한다)이 해당 사업장에 할
당된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할당량 대비 100분의 15이상
100분의 25미만 감소한 수준
인 경우 : 해당 할당대상업체
의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중
그 사업장 단위로 할당된 배
출권에서 그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
을 제외한 수량의 100분의 50
에 해당하는 수량

2. 해당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
출량(배출효율기준방식을 적
용받는 경우에는 활동자료량
을 기준으로 산정한 배출량을
말한다)이 해당 사업장에 할
당된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할당량 대비 100분의 25 이상

<신 설>

⑤ · ⑥ (생 략)

<신 설>

100분의 50미만 감소한 수준
인 경우 : 해당 할당대상업체
의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중
그 사업장 단위로 할당된 배
출권에서 그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
을 제외한 수량의 100분의 75
에 해당하는 수량

3. 해당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
출량(배출효율기준방식을 적
용받는 경우에는 활동자료량
을 기준으로 산정한 배출량을
말한다)이 해당 사업장에 할
당된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할당량 대비 100분의 50이상
감소한 수준인 경우 : 해당 할
당대상업체의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중 그 사업장 단위로
할당된 배출권에서 그 사업장
의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외한 수량

⑤ · ⑥ (현행과 같음)

⑦ 법 제17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의 결과에 따라 해당 할당

⑦ (생 략)

⑧ 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할당된 배출권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부문별 관장기관과의 협의와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결정한다.

⑨ 환경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할당된 배출권의 취소가 결정되면 지체 없이 해당 할당대상업체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⑩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권의 취소는 환경부장관이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거래계정에서 제32조제5항제2호에 따른 배출권 예비분을 위한 배출권 거래계정으로 배출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한

대상업체의 할당량을 재산정하면 할당량이 감소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기존 할당량과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의 결과를 반영할 때 산정되는 할당량의 차이에 해당하는 수량의 배출권을 취소한다.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⑨ ----- 제7항-----

-----.

⑩ ----- 제9항-----

-----.

⑪ ----- 제7항-----

다.

⑪ 환경부장관은 제10항에 따라 배출권을 이전하는 경우 해당 할당대상업체가 배출권 거래제정에 보유한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이 배출권의 취소에 따른 이전량보다 적으면 해당 계획기간 또는 다음 계획기간의 다른 이행연도의 배출권을 이전할 수 있다.

⑫ (생략)

⑬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할당된 배출권의 취소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1조(배출권의 거래) ①·② (생략)

③ 배출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거래하되, 법 제20조에 따라 배출권 거래계정을 등록한 자 중에서 할당대상업체가 아닌 자 또는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배출권시장 조성자가 아닌 자는 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거래해야 한다.

1. 법 제22조에 따른 배출권 거

---.

⑫ ----- 제11항-----

-----.

⑬ (현행 제12항과 같음)

⑭ ----- 제13항-----

-----.

제31조(배출권의 거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배출권은 법 제22조에 따른 배출권 거래소가 개설한 배출권 거래시장(이하 “배출권 거래소 시장”)에서 거래(이하 “장내거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배출권 거래소시장 외의 장소에서 거래할 수 있다.

래소에서 거래(이하 “장내거래”라 한다)

2. 제1호 외의 장소에서 거래

<신 설>

④ 법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배출권시장 조성자 또는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제외한다)

4. 국가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기금관리주체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9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은행 및 보험회사

6.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

<신 설>

제32조(배출권 거래계정의 등록 등) ① (생 략)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배출권 거래계정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으면 그 적절성을 검토한 후 배출권등록부에 신청인의 배출권 거래계정을 개설해야 한다. <후단 신설>

③ (생 략)

여 고시하는 자

제31조의2(배출권의 중개거래) ①

제31조제4항에 따른 시장 참여자의 배출권 거래는 배출권거래중개회사를 통하여 한다.

②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배출권 거래를 위탁한 시장 참여자(이하 “위탁자”라고 한다)의 중개거래로 취득한 배출권은 위탁자의 소유로 본다.

③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배출권의 최대 수량 내에서 위탁자의 배출권 최대 보유한도를 관리해야 한다.

제32조(배출권 거래계정의 등록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다만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배출권 거래시장의 연계 또는 통합을 위한 조약 또는 국제협정에 따라 외국 법인 또는 개인의 배출권 거래가 허용된 경우를 말한다.

⑤ (생략)

<신설>

<신설>

④ 법 제20조제3항-----

--.

⑤ (현행과 같음)

⑥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배출권 거래계정 등록신청서에 법 제22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배출권 거래목적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⑦ 법 제20조제1항 및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1조제4항에 해당하는 자는 배출권 거래계정 등록신청서의 제출을 배출권거래중개회사와 체결한 위탁계약서로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위탁자를 위하여 취득한 배출권을 배출권등록부에 최초로 등록하는 경우 배출권 거래계정의 명의와 관계없이 위탁자가 배출권등록부에 배출권 거래계정을 등록한 것으로 본다.

<신 설>

제33조(배출권 거래의 신고) ①
(생 략)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배출권 거래 신고서를 제출받으
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확인한 후 신고된 종류와
수량의 배출권을 양도인의 배출
권 거래계정에서 양수인의 배출
권 거래계정으로 이전한다.

1.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⑧ 배출권 거래계정의 등록 절
차, 서식, 등록신청서의 적절성
검토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
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3조(배출권 거래의 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1의2. 법 제22조의3제1항제1호
에 따른 배출권 또는 배출권
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투
자상품의 운용을 위한 배출권
의 매매거래 여부

1의3. 법 제22조의3제1항제2호
에 따른 배출권 또는 배출권
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투
자상품의 운용을 위한 배출권
의 중개거래 여부

1의4.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할당대상업체의 거래 여

2. ~ 4. (생략)

<신설>

<신설>

③ 제31조, 제32조 및 이 조 제1항·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배출권의 거래, 배출권 거래계정의 등록, 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등록 수수료 및 배출권 거래의 신고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4조(배출권 거래소의 설치·지정) ① ~ ③ (생략)

④ 법 제22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분

2. ~ 4. (현행과 같음)

③ 배출권거래소가 기본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장에게 배출권 거래 내역을 통보하는 경우 법 제21조에 따라 배출권 거래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④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위탁자를 위하여 배출권 거래를 하고 해당 거래 내용을 배출권 거래계정에 등록한 경우, 법 제21조에 따라 위탁자가 배출권 거래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⑤ ----- 제1항부터 제4항까지-----

--.

제34조(배출권 거래소의 설치·지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생략)

2.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배출권 거래소 회원의 배출권 거래시장에서의 거래에 관한 사항

3. 제36조에 따른 배출권 거래를 중개하는 회사의 배출권 거래의 수탁, 영업을 위한 관리기준의 설정 및 그 감시에 관한 사항

4. (생략)

<신설>

<신설>

-----.

1. (현행과 같음)

2. -----
----- 거래소시장-----
--

3. ----- 배출권거래중개회사-----

4. (현행과 같음)

⑤ 법 제22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배출권 거래소의 지정요건을 위반한 경우
2. 배출권 거래소로 지정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요건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⑥ 법 제22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2조제5항의 업무정지 조치를 위반하여,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신 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배출권 거래소의 지정 기준 및 지정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5조(배출권 거래소의 업무 및 감독) ① 배출권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4. (생략)

<신 설>

2. 그 밖에 배출권 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1조제1항에 따라 거래소 허가의 취소 조치를 받은 경우

⑦ 법 제22조제5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1조제2항에 따라 거래소 업무 정지 조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⑧ ----- 제7항-----

-----.

제35조(배출권 거래소의 업무 및 감독) ① -----
-----.

1. ~ 4. (현행과 같음)

5.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운영규정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권 상품의 일간 매매거래량 및 그 성립가격과 최고·최저 및 최종가격 등 시세의 공표

5. (생략)

② 배출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의 거래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파생상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신설>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② -----
금융투자상품의 -----

----- 금융투자상품에 -----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배출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의 발행·운용의 범위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배출권 거래소의 임직원 및 임직원이었던 자는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배출권 거래소의 상근 임직원은 배출권 거래소의 회원과 다음 각 호의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져서는 아니 된다.

1. 자금의 공여

2. 손익의 분배

3. 채무보증

4. 담보제공

5. 정상적인 거래활동(거래 상대방의 사업 내용과 관련되거나 사업목적 달성에 수반되는

<신 설>

행위로서 거래조건 등에 비추어 사회 통념상 일반적인 거래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이해관계

⑤ 배출권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 간에 해당 정보의 교류를 차단하여야 한다.

1.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업무, 배출권 거래소시장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시장 사이의 연계감시, 관련 징계 업무(이하 이 항에서 “시장감시업무 등”이라 한다)와 배출권 거래소시장의 매매체결 관련 업무간의 경우 : 시장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회원에 대한 감리 및 배출권 거래소시장과 금융투자상품시장 사이의 연계감시에 관한 정보. 다만, 배출권 거래소시장의 매매체결

<신 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시장감시업무 등을 담당하는 부서로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시장감시업무 등과 청산업무 간의 경우 : 시장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회원에 대한 감리 및 배출권 거래소시장과 금융투자상품시장 사이의 연계감시에 관한 정보. 다만, 청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시장감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시장감시업무를 위하여 매매확인, 채무인수, 차감 및 결제내역 확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⑥ 제5항 각 호의 업무 간에 정보의 교류 차단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정보(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를 제공하지 아니할 것

2. 임원(대표이사, 감사 및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제외한다) 및 직원이 제5

③ 환경부장관은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 및 건전한 거래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배출권 거래소를 감독해야 한다.

제36조(배출권 거래를 중개하는 회사) ①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배출권 거래를 중개하는 회사(이하 “배출권거래중개회사”라 한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로서 정보통신망이나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동시에 다수를 각 당사자로 하여 배출권 거래의 중개업무를 하는 자로 한다.

항 각 호의 업무를 겸직하지 아니할 것

3. 사무공간을 분리하고 제5항 각 호의 정보에 관한 전산자료가 독립적으로 저장되어 관리·감독·열람될 수 있도록 할 것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방법

⑦ -----

----- 하며, 배출권 거래소에 관한 감독 및 검사는 법 제22조의4를 준용한다.

제36조(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등록) ① 법 제22조의3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8의 설비기준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갖추어야 하는 정보통신망이나 정보처리시스템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②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등록 및 절차, 서식 등-----

-----.

제36조의2(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대한 조치) ① 법 제22조의3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배출권거래중개회사로 등록을 한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을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업무를 12개월 이상 계속해서 하지 아니한 경우

2.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부터 금전 등을 받거나 타인에게 줄 금전 등을 취득한 경우

② 법 제22조의3제3항에 따른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신 설>

기준은 별표 9과 같다.

③ 환경부장관은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중지명령

2.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3. 기관경고 또는 기관주의

제36조의3(등록취소된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배출권 처분) ① 법 제22조의3제4항에 따라, 등록취소된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환경부장관의 배출권 처분명령에 근거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분해야 한다.

1. 법 제22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배출권 : 다른 배출권거래중개회사를 통해 매도

2. 법 제2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타인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배출권 : 위탁자에게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등록
취소사실과 배출권의 처분 의
무, 처분 기간과 처분 방법 및
처분에 관한 의사결정 절차에
대하여 통지하고, 위탁자의 결
정에 따라 다른 배출권거래중
개회사를 통해 매도하거나 다
른 배출권거래중개회사로 이
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등록취
소된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법
제22조의3제4항에 따라 배출권
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 법 제22
조의3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은 1개월의 기한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배출권을 처
분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배출권의 취소

2. 제1항제2호에 따라 보유한
배출권은 환경부장관이 위탁
자에게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등록취소 사실과 배출권의 처
분 의무, 처분 기간과 처분 방
법 및 처분에 관한 의사결정
절차에 대하여 통지하고, 직권

<신 설>

으로 배출권을 이전받을 배출
권거래중개회사를 지정하고
배출권 이전을 명령

③ 등록취소된 배출권거래중개
회사의 배출권의 처분에 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한다.

제36조의4(신의성실의무와 이해
상충의 관리를 위한 내부통제기
준의 구축) ① 배출권거래중개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배출권거래중개업을
영위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배출권거래중
개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이 구축
되어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
을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낮출 경우에 한하여
법제22조의2에 따른 배출권시
장 조성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배출
권거래중개업의 영위와 관련하
여 배출권거래중개회사와 시장
참여자간, 시장 참여자들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

하여 내부통제기준을 수립하고, 수립한 내부통제기준의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를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이 때 내부통제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22조의3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업무의 분장과 조직 분리, 정보교류 차단에 관한 사항

2. 제2항에 따라 배출권거래중개회사와 배출권시장 조성자 업무의 분장과 조직 분리, 정보교류 차단에 관한 사항

3. 임직원이 업무를 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

4. 임직원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의 계열회사(위탁자가 계열회사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방법과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 및 위탁자의 배출권 중개거래의 처리에 관한 사항

<신 설>

5. 임직원의 배출권 또는 배출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 매매에 관련한 보고 등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6. 이해상충의 파악과 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내부통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36조의5(미공개중요정보) 법 제22조의3제6항에서 “미공개 주요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한다.

1. 배출권 거래 목적에 따른 보유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2. 배출권 거래 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3. 제1호 및 제2호의 정보에 준하는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신 설>

제36조의6(자료의 기록·유지) 배
출권거래중개회사는 법 제22조
의3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다음 각 호의 기간동안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배
출권 거래시장의 안정과 시장
참여자 보호를 해할 우려가 없
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그
기간을 단축하여 고시할 수 있
다.

1. 영업에 관한 자료

가. 주문기록, 매매명세 등 시
장 참여자의 배출권 및 배
출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의 운용을 위
한 배출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 관련 자료 : 10년

나. 위탁자와 체결한 계약 관
련 자료: 10년

다. 그 밖의 영업 관련 자료:
5년

2. 고유재산 및 위탁재산 운용
관련 자료: 3년

3. 내부통제에 관한 자료

가. 내부통제기준, 위험관리
등 준법 감시 관련 자료: 5

<신 설>

년

나. 임원·전문인력의 자격,

이해관계자 등과의 거래내

역 관련 자료: 5년

다. 그 밖의 내부통제 관련 자

료: 3년

제36조의7(매매명세의 통지) 배출

권거래중개회사는 법 제22조의

3제6항제5호에 따라 매매명세

를 통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따라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따른 기한 내에

통지할 것

가. 배출권 거래의 체결, 종

목, 수량, 가격, 수수료 등

모든 비용 : 매매가 체결된

후 지체 없이

나. 배출권 매매가 체결된 경

우, 월간 매매내역, 손익내

역, 월말 현재 예탁금 잔액

현황, 배출권 거래계정 등

록 등의 내용 : 매매가 체

결된 날의 다음 달 20일까

지

2. 다음 각 목의 방법 중 배출권

거래중개회사와 시장 참여자

<신 설>

간 미리 합의된 방법으로 통
지할 것. 다만, 거래상대방이
통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비치
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
속하여 수시로 조회가 가능하
게 함으로써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가. 서면 교부

나. 전화, 전신 또는 팩스

다. 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제36조의8(시장참여자 예탁금의
별도 예치) ①배출권거래중개회
사는 시장 참여자로부터 받은
예탁금(배출권 거래시장에 참여
하는 위탁자로부터 배출권 거래
와 관련하여 예탁받은 일체의
금전을 말한다)은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지체없이 「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7항제3호에 따른 증
권금융회사에 예치해야 한다.
② 배출권거래중개회사 제1항
에 따라 증권금융회사에 예탁금
을 예치할 경우 그 예탁금이 배

출권거래중개회사에 거래를 위
임한 시장 참여자의 재산이라는
뜻을 밝혀야 한다.

③ 누구든지 증권금융회사에 예
치한 시장 참여자의 예탁금을
상계(相計)·압류(가압류를 포함
한다)하지 못하며, 해당 예탁금
을 예치한 배출권거래중개회사
는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별
도로 고시한 경우 외에는, 증권
금융회사에 예치한 시장 참여자
의 예탁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증권금융회사는 배출권거래
중개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위탁자의 청구에 따라 예치된
예탁금을 그 위탁자에게 우선하
여 지급하여야 한다.

1. 배출권거래중개회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해산
결의를 한 경우
3.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신 설>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
의 투자중개업의 전부 양도
또는 전부 폐지의 승인 또는
전부 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
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⑤ 그 밖에 예탁금의 산정, 예치
기한, 예탁금의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
관이 고시로 정한다.

제36조의9(손실보전 등의 금지)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배출권
거래와 관련하여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위하여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배출권 거래시장에 참여하는
시장 참여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
위

2. 배출권 거래시장에 참여하는
시장 참여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

<신 설>

<신 설>

위

3. 배출권 거래시장에 참여하는
시장 참여자에게 일정한 이익
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
하는 행위

4. 배출권 거래시장에 참여하는
시장참여자에게 일정한 이익
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

제36조의10(불건전영업행위의 금
지) 법 제22조의3제6항제7호 마
목에서 ‘대통령령으로 금지하는
행위“란 「자본시장과 금융투
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
호, 제2호, 제5호, 제6호, 제7호
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6조의11(배출권거래중개회사
의 설명의무) 법 제22조의3제7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배출권 거래의 내용과 특성
2. 배출권 거래의 위험 정도와
그 내용
3. 배출권거래중개계약의 해지
와 해제
4. 배출권거래중개회사를 통한
배출권 거래계정의 관리

<신 설>

5. 수수료 비율 및 금액에 관한 사항

제36조의12(배출권거래중개회사
의 업무보고서 제출) 법 제22조
의3제8항제3호의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말한다.

1.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개요
및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경
영하고 있는 업무의 내용
2. 위탁자 재산 현황과 그 보호
에 관한 사항
3. 배출권 매매 및 배출권을 기
초자산으로 하는 금융투자상
품의 발행·운용, 그 밖의 거래
관련 업무내용, 거래현황과 평
가손익현황(위험 회피를 위한
매매거래의 평가손익을 포함
한다) 등에 관한 사항
4. 배출권거래중개회사나 그 임
직원이 최근 환경부장관, 금융
위원회위원장 및 금융감독원
장 등으로부터 조치를 받은
경우 그 내용
5. 그 밖에 배출권거래중개회사
의 영업이나 경영에 관련된

<신 설>

사항

제36조의13(시장 참여자에 대한

감독 등) ① 환경부장관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

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

다)의 협조를 받아, 시장조성자,

배출권거래중개회사, 그리고 제

31조 제4항의 시장 참여자의 배

출권 거래시장 관련 업무와 재

산 상황에 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배출권 매매거

래와 배출권 중개거래의 공정한

수행과 배출권등록부의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에게

제1항의 시장 참여자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한 법률」 제419조에 따른 검사

를 요구하거나, 환경부와의 공

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배출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배출권의 시

제37조(배출권시장 조성자) ① ·

② (생략)

③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시장조성자의 지
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시
장조성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합병·파산·폐업 등의 사유
로 사실상 영업을 종료한 경
우

2.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한 경
우

3. 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른
활동 실적을 고의 또는 중과
실로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거
나 그 기한 내에 보고하지 않
은 경우

4. 법 제22조의2제4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활동 실적을 평
가하여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하지 않은 경우

<신설>

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
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7조(배출권시장 조성자의 지정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22조의2에서 정하는 자
중에서 시장조성자로 지정을 받
고자 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
는 별표 10에서 정한 시장조성
자 지정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환경부장관에
게 제출해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배

④ (생략)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실적을 평가할 때 배출권 거래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생략)

⑦ 제6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장조성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시정 기한까지 필요한 이행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장조성자의

출권 거래시장의 안정성과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시장조성자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시장조성자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시장조성자로 지정할 수 없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⑥ ----- 제5항-----

----.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⑧ 제7항-----

-----.

⑨ 환경부장관은 시장조성자에게 시장조성에 필요한 배출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장조성 예비분에서 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항의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각 시장조성자에게 물량을 달리하여 대여할 수 있다.

⑩ ----- 제9항-----

지정 절차, 실적 제출 및 평가,
시정요구 및 그 이행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한다.

<신 설>

-----.

제37조의2(배출권시장 조성자의
지정취소 등) ① 법 제22조의2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 시장조성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합병·파산·폐업 등의 사유
로 사실상 영업을 종료한 경
우
2.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는
경우 등 배출권 거래시장의
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
를 한 경우
3. 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른
활동 실적을 고의 또는 중과
실로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거
나 그 기한 내에 보고하지 않
은 경우
4. 법 제22조의2제4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활동 실적을 평
가하여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하지 않은 경우

5. 시장조성자의 의무이행 실적
이 현저히 미흡한 것으로 평
가될 경우

6. 제37조제3항에 따른 시장조
성자 지정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7. 그 밖에 시장조성 행위를 하
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절하다
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시장조성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환경부 장관은 6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이 취소된
시장조성자가 다음 각 호에 따
라 보유한 배출권을 처분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1. 예비분에서 대여받은 배출권
: 배출권으로 상환

2. 지정취소된 시장조성자가 자
기의 계산으로 보유하는 배출
권 : 배출권거래중개회사를 통
하여 매도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정이
취소된 시장조성자가 보유한 배
출권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환경부장관은 직권

	<u>으로 해당 시장조성자가 보유한 배출권을 법 제18조에 따른 예비분 관리를 위한 계정으로 배출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시장조성자가 보유한 배출권을 처분한다.</u>
제38조(시장 안정화 조치의 기준 등) ①·② (생략)	제38조(시장 안정화 조치의 기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 ----- ----- -----.
1. 최근 1개월의 배출권 평균 가격이 직전 2개 연도 배출권 평균 가격의 100분의 60 이하가 된 경우	1. ----- -- <u>최근 2년간</u> ----- ----- 70 -----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④ ~ ⑧ (생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장 안정화 조치의 시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⑨ ----- ----- 조 <u>치의 시행 방법, 산정 방식</u> --- ----- -----.
제39조(배출량의 보고 및 검증)	제39조(배출량의 보고 및 검증)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할당대상업체는 제출된 명세	② -----

서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명세서를 변경하여
작성하고, 검증기관의 검증보고
서를 첨부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 ⑧ (생략)

제40조(검증기관의 지정 등) ①
(생략)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검증기관의 업무의 범위를
같은 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
항을 검증하는 업무로 각각 구
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검증기관을 지정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미 지정된 것으로 보는 경우
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고시
하고, 해당 기관에 검증기관 지
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 ⑤ (생략)

⑥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검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행정처

30일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40조(검증기관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있고, 검증기
관의 지정 유효기간은 지정일로
부터 3년으로 한다.

③ -----
----- 지정
한 -----

-----.

④ · ⑤ (현행과 같음)

⑥ 법 제24조의2제5항-----

분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⑦ 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의2 제4항에 따라 검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검증기관에 통보하고,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고시해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라 지정 취소를 통보받은 검증기관은 검증기관 지정서를 환경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⑨ 검증기관은 법 제24조의2제5항에 따라 매년 반기별로 검증업무 수행결과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⑩ · ⑪ (생략)

제41조(검증심사원의 자격 등) ① ~ ③ (생략)

④ 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른 검증심사원의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의3 제3항에 따라 검증심사원의 자격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검증심사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⑦ ----- 법 제24조의2 제5항-----

-----.

⑧ 제2항 후단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제7항-----

-----.

⑨ ----- 법 제24조의2제7항-----

-----.

⑩ · ⑪ (현행과 같음)

제41조(검증심사원의 자격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24조의3제4항-----

-----.

⑤ ----- 법 제24조의3 제4항-----

-----.

⑥·⑦ (생략)

<신설>

⑥·⑦ (현행과 같음)

제41조의2(온실가스검증협회의
설립허가) ① 법 제24조의4제1
항에 따라 온실가스검증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 설립허
가를 신청해야 한다.

1. 설립취지서

2. 창립총회 회의록

3.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정관

가. 명칭

나. 목적

다. 사무소의 소재지

라. 협회의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마.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
항

바. 임원 및 직원, 기구 및 조
직 등에 관한 사항

사. 회원의 자격, 가입·탈퇴,
권리·의무, 직무상 분쟁
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

아. 회의에 관한 사항

자. 회비에 관한 사항

차.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

카.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임원 취임 예정자의 취임승
낙서

5. 재산에 관한 사항을 증명하
는 서류

6. 제41조의3 각 호에 따른 업무
를 포함한 협회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업무의 수행계
획서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의4
제3항에 따른 협회의 설립허가
를 할 때에 제1항 각 호의 서류
의 내용이 법령과 법 제24조의4
제1항에 따른 협회 설립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확인해
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설립 허가를
받은 협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협회의 지도·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
회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
게 할 수 있다.

<신 설>

제42조(배출량의 인증) ① ~ ③
(생 략)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제3
항에 따라 배출량 인증 결과를
해당 할당대상업체에 통지할 때
에는 부문별 관장기관에도 그

⑤ 협회의 사업에 드는 경비는
회원이 내는 회비와 사업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41조의3(온실가스검증협회의
업무 등) 법 제24조의4제5항에
따라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를 수행한다.

1.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량
등의 검증에 관한 조사·연구
· 교육·홍보
2. 온실가스 검증의 공정성·전
문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사업
3. 온실가스 검증 관련 국제교
류 및 협력
4. 온실가스 검증과 관련된 업
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5. 그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업
무

제42조(배출량의 인증)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법 제25조제4
항-----

_____.

⑤ (현행과 같음)

제44조(배출권의 제출) ① -----

----- 8개월 이내 -----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6조(배출권의 이월 및 차입 절차) ① ----- 자

는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8개월

해야 한다.

1. 법 제25조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인증받은 결과를 통
보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

2. 법 제38조제1항제3호·제4호
·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로 이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
과를 통보받은 날

② 할당대상업체가 아닌 자로서
배출권을 보유한 자는 이행연도
종료일에서 5개월이 지난 날부
터 10일 이내에 보유한 배출권
의 이월에 관한 신청서를 전자
적 방식으로 환경부장관에게 제
출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44조제1항
에 따른 배출권의 제출기한 10
일 전까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
른 신청에 대하여 검토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해
야 한다.

제47조(상쇄) ① ~ ③ (생략)

-----.

<삭 제>

<삭 제>

<삭 제>

② -----
----- 제출기한-----

-----.

제47조(상쇄) ① ~ ③ (현행과 같
음)

④ 상쇄배출권 중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이행연도로 이월되지 않거나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되지 않은 상쇄배출권은 같은 항 후단에 따라 각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법 제38조제1항제3호·제4호·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제57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위임한다.

1. ~ 3. (생략)

<신설>

4.·5. (생략)

② (생략)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

④ -----

----- 8
개월-----

-----.

제57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 -----

-----.

1. ~ 3. (현행과 같음)

3의2. 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시장 참여자의 배출권 거래계정의 등록 및 관리·운영

4.·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1. ~ 3. (생략)

<신설>

4. (생략)

5.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의 인증
을 위한 자료의 조사·분석
및 검토

<신설>

<신설>

<신설>

6. (생략)

<신설>

-----.

1. ~ 3. (현행과 같음)

3의2. 법 제22조의3에 따른 배
출권거래중개회사의 등록·등
록 취소 및 관리·감독

4. (현행과 같음)

5. 법 제13조제2항, 제24조 및
제25조제1항 ----- 인증
등-----

5의2.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적합성 평가를 위한 처리 시
스템의 구축·운영

5의3.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인증결과의
할당대상업체 통지 및 배출권
등록부 등록

5의4.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원활동 중 제53조제1항제7
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 절약, 효율 향상 등의
촉진 및 설비 투자사업에 대
한 지원활동

6. (현행과 같음)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40조제2
항에 따라 제41조제3항에 따른

④ (생 략) <u><신 설></u>	<u>검증심사원 업무기준에서 정하</u> <u>는 교육 중 검증심사원이 등록</u> <u>일로부터 매 2년마다 받아야하</u> <u>는 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u> <u>한다)에 관한 업무를 협회에 위</u> <u>탁할 수 있다.</u>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u>제5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u> <u>4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u> <u>과기준은 별표 11과 같다.</u>
--	---